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2. 11. 23.(수)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2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일

3. 제안이유

-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교육 및 연수(안 제6조)
- 홍보(안 제7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제9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이유

- PC와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사용이 대중화되고 온라인 수업이나 스마트기기 활용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스마트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장시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여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 불균형 발생이 증가하며 허리, 목, 어깨, 관절 등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각종 근골격계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거북목과 허리디스크 등임.
-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체형 변화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여 이는 학업능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바른 자세를 습관화하는 교육적 지도와 불균형 체형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
- 이 같은 맥락에서 타 시도의 경우 2019년에 제정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충남, 광주, 대구 9개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과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시도교육청	조례명	제정일
강원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4.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2.

경북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25.
경남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11. 4.
전남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	2022. 4. 7.
충남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1.
광주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 교육 지원 조례	2021. 4. 15.
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2021. 12. 30.
인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2019. 2. 18.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 및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VDT증후군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초 6학년, 중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흉부 X-선 촬영을 통한 척추측만증 검사 실시와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증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및 상담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연도	초등학생(명)			중학생(명)			계(명)		
	검 사 학생수	이 상 학생수	비율(%)	검 사 학생수	이 상 학생수	비율(%)	검 사 학생수	이 상 학생수	비율(%)
2017	29,078	16	0.06	14,261	209	1.47	43,339	225	0.52
2018	28,552	59	0.21	13,132	190	1.45	41,684	249	0.60
2019	28,549	34	0.12	13,466	138	1.02	42,015	172	0.41
2021	14,342	6	0.04	13,954	395	2.83	28,296	401	1.42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 제공자료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안 제4조에 매년 수립하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시대변화와 요구에 따라 확대·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는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태파악을 근거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를 규정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부모 대상 정보제공 및 학부모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학교교육과 연속선상에서 바른 체형이 생활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는 전문적인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바른 생활 습관 및 건강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해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충북의 경우 2020년도부터 시작된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이 확대되고, 인터넷과 핸드폰, SNS 사용이 일상화 됨에 따라 거북목, 허리디스크 등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증가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하다 판단됨.

- 전체적으로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